

##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59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23.

발의자 : 김도읍 · 김태흠 · 김성찬  
정갑윤 · 박완수 · 최연혜  
김진태 · 추경호 · 곽대훈  
주호영 · 김기선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 
서는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대에  
서는 약 50% 이상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놓고 있음.  
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  
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 및  
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,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 
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함.  
이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·남  
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학생들의 건강을 지  
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약물”을 “마약류 등 약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학생의 보건관리)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,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음 주·흡연과 <u>약물</u> 오용(誤用)·남 용(濫用)의 예방, 성교육, 정신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 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학생의 보건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마약류 등 약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